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0.12.20

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0년 11월 15일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0년 11월 22일 회부

라. 상정일자 : 제157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위원회(2010.12.3)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정국장 안동수)

가. 제안이유

- 2011년 1월 1일 현행 「지방세법」 분법에 따른 「지방세기본법」 및 새 「지방세법」의 시행과 행정안전부 2011년도 「자치구 구세 조례 표준안」 시달에 따라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종전 '사업소세')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시·구세 세목교환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세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조례」로 함
- 제1장 총칙
 - 1)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2조)
 - 2) 부과·징수 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2장 등록면허세

- 1) 제1절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세율,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사항(안 제4조~안 제6조)
- 2) 제2절 :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 납기, 비과세 신청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안 제9조)

○ 제3장 재산세

- 1) 세율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2) 중과대상지역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3) 토지·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에 관한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안 제14조)
- 4) 재산세 과세대장 직권등재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5) 비과세 대상자의 신고사항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 6) 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 7) 납세관리인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이 현 영)

- 이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3개 법으로 분법(2010.3.31 공포, 2011.1.1 시행)되면서 전부개정된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우리구 관련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상정된 안건임
-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우리구 관련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등록과 면허에 관한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신고의무 등을 서울특별시 준칙안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적법하다고 판단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27 호
----------	--------

제출연월일 : 2010.11.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조례 전부를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11년 1월 1일 현행 「지방세법」 분법에 따른 「지방세기본법」 및 새 「지방세법」의 시행과 행정안전부 2011년도 「자치구 구세 조례 표준안」 시달에 따라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종전 '사업소세')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시·구세 세목교환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구세의 세목, 서류송달방법 등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 부과·징수 관련 일반사항은 새로 제정하는 「지방세 기본조례」로 관련 내용을 이관함
- 나. 「지방세기본법」 시행에 따른 시·구세 세목교환에 따라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종전 '사업소세')을 폐지하고 기존 면허세를 포함한 등록면허세를 신설함 (안 제4조에서 제9조까지)
- 다. 기타 상위 법령 인용조문 및 일부 용어 정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2010.3.31 개정, 2011.1.1 시행) 및 「지방세법」(2010.3.31 전부개정, 2011.1.1 시행)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합의사항 없음
 - 라. 기 타
- (1) 입법예고('10.10.14 ~ 11.3, 20일간) 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사무 없음

첨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조례”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구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조례」 제5조에 따른다.

제2장 등록면허세

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4조(과세표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5조(세율)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유권의 보존: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세액이 3천원 미만일 때에는 3천원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 가. 지상권: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
 - 나. 저당권: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 다. 지역권: 요역지(要役地) 가액의 1천분의 2
 - 라. 전세권: 전세금액의 1천분의 2
 - 마. 임차권: 월 임대차금액의 1천분의 2
3.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및 가등기
 - 가.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 나. 가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
4. 그 밖의 등기: 건당 3천원

제6조(신고 및 납부) 등록면허세의 과세물건을 등기·등록하려는 자는 해당 과세물건의 등기·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과 관계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4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1. 등기·등록을 하려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등기·등록의 원인
3. 과세대상의 소재지
4. 토지: 지번·지목·면적 및 용도
5. 건축물: 종류·구조·바닥면적·연면적 및 용도
6. 자동차·건설기계: 종류·연식·용도
7. 선박: 선질·명칭·정계장·구조·용도·총톤수 또는 적재량
8. 광업권: 광물의 종류·광구의 면적·광업권등록의 연월일과 등록번호
9. 어업권: 어업의 종류와 명칭·어장의 면적·어업의 면허연월일과 면허번호
10. 과세대상의 가액
11. 그 밖의 참고사항

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7조(세율) 법 제34조에 따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세율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구 분	세 율
제1종	45,000원
제2종	36,000원
제3종	27,000원
제4종	18,000원
제5종	12,000원

제8조(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 징수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조(비과세 신청) 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1. 면허를 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면허물건의 소재지
3. 면허의 종류 및 종별
4. 비과세 신청사유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재산세

제10조(세율) 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토지
 -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5,000만원 이하	1천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5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1천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3
10억원 초과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4

다. 분리과세대상

-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건축물

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제11조에서 정하는 지역의 「지방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10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3. 주택

가.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별장: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그 밖의 주택

과세표준	세 율
6천만원 이하	1천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2.5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4

4. 선박

가. 법 제13조제3항제5호에 따른 고급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

나. 그 밖의 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5. 항공기: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제11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2조(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관한 신고의무) ①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된 때
2. 건축물 및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3.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4. 토지·건축물 및 주택이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때
5. 토지·건축물 및 주택이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때
6.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7. 토지·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가 변경된 때

② 납세의무자가 영 제5조에 따른 시설과 영 제6조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연월일, 종류, 시설 및 시설물의 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박을 취득한 때
2. 선박이 매도되거나 멸실되었을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 선박이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때
5. 선박이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때

제14조(항공기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연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공기를 취득한 때
2. 항공기가 매도되거나 멸실되었을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 항공기가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때
5. 항공기가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때

제15조(재산세 과세대상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재산세 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비과세 대상자의 신고사항) 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1.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2.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6.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7.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17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 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는 지체 없이 해당 재산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른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 연월일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그 신고가 없어 직권 조사로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재산세과세대장에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납세관리인 지정) 구청장은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지정일 부터 10일 이내에 납세자 및 납세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및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